

『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길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상담소의 기능, 상담대상 및 방법(안 제3조, 제4조)

다.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9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」 등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30. ~ 4. 6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」 제3조에 의거하여 근로복지 증진과 노동상담,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3,200여개 업체와 10만여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미시 환경에서는 1989년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노동상담소의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,
-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비영리법인 및 노동단체에 업무 위탁 시 자격요건, 위탁 범위, 선정 절차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